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제정 : 2011. 4. 12.

개정 : 2012. 7. 10. / 2012. 12. 11. / 2013. 3. 12. / 2015. 11. 17. / 2018. 11. 1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학술단체”의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 “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다만, 학회 및 연구회가 아닌 학술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사절차 및 서식에 따른다.

제 3 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 3개월 이전까지 다목에 따른 구비서류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다. 구비 서류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별표2 서식), 조직위원회 명단,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별표5 서식) 및 결산,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 증명서(해당기관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라. 결과보고 :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를 대한의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제학회

가.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국내 소재 국제학회

나. 구비 서류 :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별표3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회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별표6 서식), 최근 3년간 발행

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다.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3. 학술단체 :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가.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는 나목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학술단체로 본다.

나. 구비서류 : 학술단체 인정 신청서(별표4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회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별표6 서식),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 증명서(해당기관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다.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학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심의비용) 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학술단체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비(부가세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가. 회원학회의 경우 : 110,000원

나. 비회원학회의 경우 : 220,000원

2. 국제학회 : 330,000원

3. 학술단체 : 330,000원

제 5 조 (회의) 인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

제 6 조 (회의록) 위원회는 인정 심사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 7 조 (의결) 인정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인준 및 결과통보) 위원회를 통과한 인정 심사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한의사 협회를 경유하여 신청 단체에 각각 통보한다.

제 9 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심사기준 및 심의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

(개최 지원 신청용)

1. 신청인

①주관단체명			
②주소		③우편번호	
		④담당자	
⑤전화번호		⑥팩스	
⑦이메일		⑧휴대폰	
⑨대한의학회 가입여부	회원학회 <input type="checkbox"/> 비회원학회 <input type="checkbox"/>	⑩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산하학회 소속여부 ※비회원학회인 경우만 기재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회명: _____) 없음 <input type="checkbox"/>

2. 학술대회

⑪학술대회 명칭	(국문) (영문)		
⑫개최기간		⑬개최장소	
⑭참가국	국가명 기재 (총 개국)		
⑮외국인 참가자수 (별표5자 좌장 토론자 제외)	명		
⑯전차 학술대회 정보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최 주기: _____)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번이 1차 학술대회임 <input type="checkbox"/>)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규정」 제3조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을 상기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한의학회 귀중

- ※ 구비서류 : 1. 조직위원회 명단
 2.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3.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별표5 양식에 의거) 및 결산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작성방법 : ① 주관단체명과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법인명과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⑩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일 경우 산하학회 증명서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⑭ 참가하는 국가명과 국가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

(사무국이 국내 소재인 국제학회)

1. 신청인

① 학회명			
② 주소		③ 우편번호	
		④ 담당자	
⑤ 전화번호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휴대폰	
⑨ 학회대표		⑩ 학회대표 소속	
⑪ 학회 창립연도		⑫ 홈페이지주소	
⑬ 학술지명			

2. 학회 구성

⑭ 정회원수	명	⑮ 외국인 정회원수	명
⑯ 정회원 국가			
⑰ 국내 관련학회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규정」 제3조에 따라 국제학회 인정 신청을 상기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한의학회 귀증

- ※ 구비서류 :
1. 학회 정관 또는 회칙
 2. 임원 명단, 회원 명단 및 회원 구성 현황(회원 중 의사 비율, 대학병원-개원의-기타 등 소속 분포, 전문과목 분포 포함)
 3.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별표 6 양식에 의거, 연도별로 각각 작성)
 4.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5.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작성방법 :
- ① 학회명과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법인명과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⑯ 정회원이 소속된 국가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⑰ 국내에 관련된 학회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학술단체 인정 신청서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인 경우)

1. 신청인

① 학회명			
② 주소		③ 우편번호	
		④ 담당자	
⑤ 전화번호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휴대폰	
⑨ 학회대표 성명		⑩ 학회대표 소속	
⑪ 홈페이지 주소		⑫ 정회원수	명
⑬ 학회 창립연도			
⑭ 학술지명	(국문) (영문)		
⑮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산하학회 소속여부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회명: _____)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규정」 제3조에 따라 학술단체 인정 신청을 상기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한의학회 귀중

- ※ 구비서류 : 1. 학회 정관 또는 회칙
 2. 임원 명단, 회원 명단 및 회원 구성 현황(회원 중 의사 비율, 대학병원-개원의-기타 등 소속 분포, 전문과목 분포 포함)
 3.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별표 6 양식에 의거, 연도별로 각각 작성)
 4.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5.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작성방법 : ① 학회명과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법인명과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⑮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일 경우 산하학회 증명서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결과 보고서

① 학술대회 명칭	(국문) (영문)				
② 개최기간	③ 개최장소				
④ 주관단체명					
⑤ 발표자 (초청연자, 좌장, 토론자)					
⑤ 참가국 (※ 한국 포함)	(총 개국)	외국인 참가자수	명	내국인 참가자수	명
⑥ 연제발표자 (포스터, 구연 발표 등)					
⑥ 참가국 (※ 한국 포함)	(총 개국)	외국인 참가자수	명	내국인 참가자수	명
⑦ 참가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					
⑦ 참가국 (※ 한국 포함)	(총 개국)	외국인 참가자수	명	내국인 참가자수	명
<p>「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규정」 제3조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결과 보고서의 내용 및 구비서류의 명단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 (직인)</p>					
대한의학회 귀중					
<p>※ 구비서류 : 1.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북 (표지, 영문 프로그램, 연제발표 리스트 필수 포함, 전체 프로그램북 PDF 파일 제출 가능) 2. 외국인 발표자 명단 (국가, 이름, 소속 필수 포함) 3. 외국인 연제발표자 명단 (국가, 이름, 소속 필수 포함) 4. 외국인 참가자(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 명단 (국가, 이름, 소속 필수 포함) 5. 결산 자료 (수입 및 지출 현황)</p>					
<p>※ 작성방법 : 1.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명단은 동일하게 작성하며, 중복 참가자는 제외 2. ⑤⑥⑦ 참가국은 참가하는 국가명과 국가수를 모두 기재</p>					
<p>※ 유의사항 : ①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시 반려함 ②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시 추후 모든 학술대회 신청에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p>					

학술 활동 보고서(년)

학 회 명	(국문)		
	(영문)		
주 소	☐		
전 화		창립년월일	
팩 스		e-mail	

국내 학술 활동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연구비 지급제도	우수논문 에 대한 포상제도	전국적인 조사연구 실시
학술대회 발표 연제수 (포스터포함)	발표 논문 심사제도	학술대회 참가자수 (준회원포함)				
년()편	있다() 없다()	()명	년()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년()과제

국제 학술 활동		학회 운영			
초청 강의 활동	국제학술대회 유치 개최 유무	회원 수	회원 관리의 전산화 유무	학회사무실 보유	학회 상근 직원 채용
년()연제	유 () 무 ()	()명	유() 무() ※ DB명 또는 사용프로그램명 ()	있다 () 없다 ()	()명

학회지 발간			
연간 발간 회수	게재 논문 심사제도	Index Medicus, SCI, SCI Expanded 등재 유무	학회지 투고규정에 대한의사협회 발간 용어집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기함
년()회	있다() 없다()	유() 무() ※ 색인지명()	예 () 아니오()

※ 본 보고서는 최근 3년간의 학술 활동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초록집, 학회지를 발간한 경우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와 목차 - 학회지 호별 표지와 목차